

2017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목 차

I 2017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취지 및 목적	2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3
4.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절차	6

II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자세

1. 어린이집 이해하기	8
2.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과 역량	13
3.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세	15
4.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 유의사항	17

III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부모모니터링 활동방법	21
2. 컨설팅 활동방법	25

IV 부모모니터링 지표 해설

1.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근거 및 방향	28
2. 부모모니터링 세부 지표 해설	28
1) 건강관리	33
2) 급식관리	46
3) 위생관리	58
4) 안전관리	75

V 서식

1. 부모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06
2. 컨설팅 결과보고서	114
3. 서약서	116

VI 부록

1. 2017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주요 개정사항	118
2. 2017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주요 변경사항	120

I. 2017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증가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두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영양,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사고 방지 필요
-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무원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달리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부모의 참여와 어린이집의 개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 수행
- 어린이집 참관 위주의 모니터링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중심의 체계 구축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 사후 컨설팅 연계
-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가능

- 2013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으로 시작
 - * '13.5.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항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실적
 -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7,169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 부모 892명, 보육·보건전문가 669명 참여
- 2015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실적
 -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7,984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 부모 845명, 보육·보건전문가 731명 참여
- 2016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실적
 -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6,237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 부모 804명, 보육·보건전문가 708명 참여

2. 사업 취지 및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전파

영유아보육법

-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운영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되 모니터링단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일부를 관할 시도단위로 시행 가능
- * 시군구 단위로 운영할 경우, 해당 시도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의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대상

○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중복방지, 어린이집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 부담완화 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을 정하여 운영 함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4~'16)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종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조정 함)
- 2016년 열린어린이집(보건복지부 지정, 보육기반과-10993('16.12.14))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 당해 연도 확인점검 받은 어린이집이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된 경우, 어린이집 요청 또는 지자체가 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 선정·구성

○ 모니터링단 선정기준은 “2017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 하며, 현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관할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 부모참여 확대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를 제고 함

-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 보육사업 안내”의 선정기준 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 함

- * <예시 ①>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 보육현장 근무경력 3→5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3년 이상인 자
- * <예시 ②> 보건전문가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보육현장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 추가)

○ 선정기준(2017년 보육사업안내)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보건전문가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부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컨설턴트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인 자 (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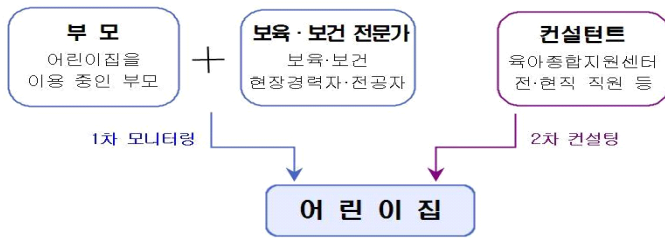
-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를 1:1로 하며, 2인 1조로 구성

- 컨설턴트는 2차 사후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단원은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사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에 의거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지역특성상 공모 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예:읍면 도서지역 등)

- * 모니터링단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촉할 수 있음



□ 부모모니터링단원 교육

- 시도지사는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상반기: 현장 및 이론교육, 하반기: 보수교육) 다음 내용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 시도지사는 직접 주관하여 교육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교육강사를 파견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4.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절차

구분	주요 내용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부모, 보육·보건전문가), 모니터링 신분증 제작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현장 및 이론교육, 보수교육)
어린이집 선정 및 부모모니터링단원 배치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구성)
모니터링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원 : 어린이집 방문 일자 1주일 전까지 사전 협의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 금지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모니터링 진행(모니터링 지표 근거) · 모니터링 진행 시 현장개선표지 · 부모모니터링단원 및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 받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활동결과보고서는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 ·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항은 보육담당공무원 등에게 즉시 보고
교육 및 간담회	· 모니터링 실시 중간에 모니터링단원 대상의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컨설팅 의뢰 및 실시, 결과보고	· 어린이집 요청, 모니터링 결과 미흡 어린이집,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지자체)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여 전문컨설턴트가 진행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시도 또는 시군구청)

II.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자세

II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자세

1. 어린이집 이해하기

□ 어린이집의 정의(영유아보육법 제2조)

-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임

□ 어린이집의 유형(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11인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21인 이상)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21인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11인 이상)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21인 이상)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영유아보육법 제27조)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보육시간 연장에 따라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 등 운영가능
 -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 맞춤형 보육 * 실시
- *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 개별 영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토요일의 경우, 토요일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예시)

영아반 하루 일과의 예(만2세)		유아반 하루 일과의 예(만4세)	
7:30~9:00	등원 및 통합보육	7:30~9:00	등원 및 통합보육
9:00~9:30	손 씻기 및 기저귀 갈기/ 오전 간식	9:00~10:30	오전 자유선택활동/ 오전 간식
9:30~10:50	오전 실내자유놀이	10:30~10:50	정리정돈 및 화장실가기
10:50~11:10	정리정돈 및 화장실가기	10:50~11:20	대·소집단 활동
11:10~11:50	실외놀이 및 손 씻기	11:20~12:20	실외활동 및 손 씻기
11:50~13:2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2:20~13:2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3:20~15:00	낮잠	13:20~14:00	조용한 활동, 정리정돈 및 낮잠 준비
15:00~15:30	화장실가기 및 오후 간식	14:00~15:30	낮잠 및 휴식
15:30~16:50	오후 실내자유놀이	15:30~16:00	낮잠 깨기 및 정리정돈
16:50~17:30	실외놀이 및 손 씻기	16:00~16:30	오후간식
17:30~19:30	귀가 및 통합보육	16:30~18:00	오후 자유선택활동
		18:00~19:30	통합보육 및 귀가

* 어린이집 운영 상황과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하루일과 조정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2013).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2세),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 맞춤형 보육 일과 운영(예시)

운영시간	만0-1세반		만2세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07:30~09:00	-	종일반 등원 및 통합보육	-	종일반 등원 및 통합보육
09:00~10:20	맞춤반 등원/ 실내 자유놀이		맞춤반 등원/ 실내 자유놀이	
10:20~10:50	손 씻기 및 기저귀 갈기 (또는 배변활동) 오전 간식(또는 이유식)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오전 간식	
10:50~11:30	실외놀이		실외놀이	
11:30~12:40	손 씻기 및 기저귀 갈기 (또는 배변활동) 점심 및 이 닦기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점심 및 이 닦기	
12:40~14:30	낮잠 및 휴식		낮잠 및 휴식	
14:30~15:00	손 씻기 및 기저귀 갈기 (또는 배변활동) 오후 간식(또는 이유식)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오후 간식	
15:00~17:30	맞춤반 하원	실내자유놀이 손 씻기 및 기저귀 갈기 (또는 배변활동) 실외놀이	맞춤반 하원	실내자유놀이 손씻기 및 화장실 가기 실외놀이
17:30~19:30		통합보육 (실내 자유놀이) 종일반 하원		통합보육 (실내 자유놀이) 종일반 하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7). 맞춤형 보육운영 가이드라인 교사용

□ 하루 일과의 영유아 놀이와 활동

하루 일과	내 용
등원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아주는 시간임. 이 때 교사는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를 확인함
간식/점심	먹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줌. 영유아들은 손 씻기, 이 닦기, 수저 사용하기, 정리하기와 같은 기본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음
자유선택활동	영유아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구성된 흥미영역에서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고 놀이함.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지원
정리정돈	놀이한 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라 알맞은 정리 방법 사용. 정리정돈을 하면서 서로 돕기, 규칙 지키기를 배움
실외활동	실외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다양한 신체운동 놀이를 함으로써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탐구하는 태도가 발달하도록 함
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노래, 게임, 동극 등을 소집단 또는 대집단으로 진행함. 교사가 계획하여 제공하기도 하고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과 태도를 익힘
낮잠	영유아들이 낮잠을 쉽게 잘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조성함. 영유아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교사는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돌봄
귀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 교사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의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를 부모와 이야기 나눔

*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어린이집 이해와 운영위원회 참여.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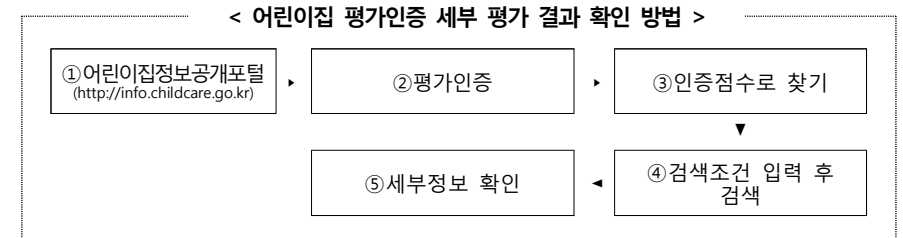
-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보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어린이집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인 보육 내용을 포함함
-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0-1세, 2세를 위한 보육과정, 3-5세를 위한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
 - *3-5세 누리과정이란 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 어린이집 평가인증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2.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과 역량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영역의 모니터링

- 부모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닌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임

○ 모니터링 지표를 바탕으로 현장개선지도

- 부모모니터링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단순 방문하여 돌아보는 개념이 아닌, 보육·보건전문가가 함께 방문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현장에서 개선사항을 지도할 수 있음
- 현장개선지도 시에는 반드시 '보육·보건전문가'가 의견을 전달함

○ 2차 사후 컨설팅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

- 모니터링 이후라도 어린이집이 보다 심도 깊은 컨설팅을 원하거나, 미흡한 어린이집의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모니터링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영역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량

○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이해

- 어린이집 운영과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지표 이해 및 정확한 숙지
- 모니터링 지표 관련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

<Point>

- 부모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중요
- 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육사업안내, 지도점검이나 평가인증지표 등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음
- 개인적인 취향이나 요구 등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해석하지 않음(객관적인 자세)

○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이해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함께 2인 1조로 구성되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임
- 부모 또는 전문가 한 명이 독단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모와 전문가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함
- 부모모니터링은 단순히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지표'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우수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점을 추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숙지

<Point>

- 부모모니터링은 공무원 지도점검이나 평가인증과는 달리, 어린이집의 우수한 점을 격려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어린이집 방문 전 사전일정을 조율하고, 어린이집 방문 후에도 반드시 관계자의 협조하에 모니터링 진행(어린이집 불시 방문 지양)
- 부모와 전문가가 서로 협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턴트로서의 역량

- 모니터링 이후 연계되는 사후 컨설팅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컨설팅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 컨설턴트는 보육교직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물론,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술, 적절한 유머 사용 기술이 필요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이해심, 비밀 존중,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함

<Point>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 중심의 컨설팅 진행
- 바람직한 방향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되, 어린이집 사정 상황에 맞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자료 등을 요구하여 보육교직원이 업무 부담을 느끼서는 안 됨
- 법령을 준수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 진행

3.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및 보육교직원 존중하기

-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특성 등에 대해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을 비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됨
(잘못된 예) 어린이집 환경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기, 미흡한 점에 대해 비난하기,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기 등
- 어린이집 방문 시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조리사, 운전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눈이 마주쳤을 때는 미소를 띄고 인사나 목례 등을 함

○ 영유아를 존중하고, 보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 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이 목적이므로 모니터링으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활동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됨
(잘못된 예)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놀잇감 모두 쏟아 놓기, 보육활동 중인 영유아에게 사적인 이야기 걸기 등
- 영유아와 눈이 마주쳤을 경우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나, 함부로 영유아를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됨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주는 경우 등이 아니면 신체접촉 금지)
- 모니터링 시 영유아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육교직원에게 이야기함(보육교직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

○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공감

-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감독자나 평가자가 아니라는 인식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육서비스 이용자인 부모와 영유아에게 친절한 자세 유지
-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며,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현장 개선지도 시에는 더욱 존중하며 친절하게 지도

○ 공손한 언어, 긍정적·청유형 언어 사용

- 보육교직원의 나이, 경력 등과 상관없이 모니터링단은 방문한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에게 공손하고 정중한 언어 사용(반말 금지)
-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긍정적·청유형 언어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지시적 용어 사용을 지양
- 영유아에게도 친절하고 바른 언어 사용

○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과 태도

-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방문 시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유지
(너무 짧은 치마나 헝클어진 머리 지양, 맨발보다는 양말이나 덧신 착용)
- 모니터링 시 문서 확인뿐만 아니라 보육실, 조리실 등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 지므로 반드시 위생적이어야 함
- 어린이집 방문 시에는 가급적 손을 씻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특히 조리실이나 영유아 급·간식 관찰 시에도 손을 씻고 모니터링 진행

○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제시

-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현장개선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및 지침)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지도
-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왜 이래요?"라고 지적하지 않고 친절히 안내하며,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등을 반영하여 현장개선지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입견을 가지고 모니터링 지표를 해석하지 않음(한 가지 영역이 미흡하다고 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경우 등)
- 모니터링 현장개선지도 시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

<예시>

조리직원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네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조리직원은 음식을 조리 시 반드시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위생모를 준비하셔서 착용하세요.

○ 운영의 우수사례는 적극 격려

- 우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된 점을 이야기하고 격려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감하며, 우수한 점에 대해 칭찬하기

<예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모서리에 안전장치가 잘되어 있네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우수합니다.

4. 부모모니터링 활동 시 유의사항

□ 모니터링 장소별 유의사항

○ 영유아 활동 공간(보육실 등)

- 영유아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웃으며 인사한 후 모니터링 진행. 보육실의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영유아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영유아의 대·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이나 놀이, 급·간식, 낮잠 및 휴식시간에 모니터링단의 이동 및 대화 등으로 인해 활동 및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실내의 시설 및 놀잇감 등의 모니터링 지표 확인 시, 안전 및 위생상태를 관찰이 필요하더라도 영유아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확인 (잘못된 예) 놀잇감 모두 쏘아놓기, 교구장 모두 비워놓기 등

○ 조리실 및 식당

- 조리직원에게 인사를 한 후 모니터링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함
- 모니터링은 급·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므로 조리실 입실 시에는 손을 씻고, 복장과 머리를 단정히 함(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 조리직원에게 먼저 요청하거나 양해를 구한 후 식자재 등을 확인

<예시>

식자재 유통기한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후드 및 환풍기가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드의 작동을 부탁드립니다.

- 입고일 및 유통기한 확인 등을 위해 식자재를 점검할 경우에는 특히 위생에 주의하며, 식자재가 흐트러지거나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조리직원이나 보육교직원의 협조 아래 확인함
- 음식을 조리하거나 배식 이후 설거지 등 뒤처리를 하는 바쁜 와중에서 조리실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리실 확인 전에 정중히 협조 요청을 하고, 확인 후에는 감사 인사를 함

○ 화장실

- 영유아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 관찰함

□ 일반적인 유의사항

○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점검

- 부모모니터링은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지표 범위를 넘어 확인하거나 필요이상의 문서, 관찰, 면담을 진행하지 않음
- 모니터링 지표 확인 방법은 ‘문서, 관찰, 면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마다 확인방법에 충실하게 점검
(예) 어린이집 환기 및 온도의 적절성 여부 지표의 경우 ‘관찰’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서’ 등을 요구하지 않음
- 현장개선포지나 컨설팅 시에도 모니터링 지표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육교직원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지 않음

○ 어린이집 정보를 외부로 발설하지 않으며, 비밀 유지하기

-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어린이집 정보는 어디에서도 공개하거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은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종료 후에도 유지함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시 어린이집 사진 촬영 금지
- 어린이집 정보 등을 개인 블로그나 카페, SNS 상에 공개하지 않음
-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영유아 등의 개인정보가 모니터링단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이 책임짐(정보보안 서약)
- 모니터링 진행 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열람을 하지 않음. 다만,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서류 확인 시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관계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문서 확인

○ 부모모니터링은 구매영수증 등 ‘회계 관련 장부나 문서’ 등을 확인 안함

- 부모모니터링 지표에서는 ‘구매영수증’ 등 어린이집 회계 관련 자료는 보지 않음
(예) 식품구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찰 당일 ‘식자재’ 포장지나 용기 등에 붙인 식품구입날짜 표기를 보고 관찰 진행함

○ 모니터링 종료 후에는 반드시 결과보고서에 ‘원장’ 서명을 받고, 원장 부재 시에는 원장이 위임한 ‘주임교사’ 등에게 서명 받기

- 서명 시 모니터링 점수는 공개 가능하며, 총점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표별 확인 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공개 가능함

- 부모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이므로,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 면담 등 외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음
 - (예) 부모모니터링단 중에 보험이나 물건 판매, 개인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하지 않아야 함
-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진행 시, 영유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아동학대,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나 어린이집 운영 위법사례 발견 시에는 반드시 당일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연락이 어려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 보고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자료 활용방법
 - ‘모니터링 참고사항’은 부모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 진행 시 지표 확인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로서 모니터링 시 참고할 수 있음
 - ‘참고자료’는 모니터링 지표에서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현장개선 지도나 컨설팅 시 추가로 어린이집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보육교직원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함

Ⅲ.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Ⅲ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부모모니터링 활동방법

□ 모니터링 준비

○ 모니터링 어린이집 확인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명단 확보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명단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일정 계획
- * 1일 2개소 원칙이나 어린이집 위치에 따라 조정 가능
- * 2개소 방문 시에도 '급식 또는 간식'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 어린이집 방문 일정 협의

-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1주일 전까지) 후 방문
-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 금지

○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음)
- * 다만,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자가 이용
- 사전에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을 상세하게 확인 방문
-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찾기(위치검색서비스)

□ 모니터링 진행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제시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이 경우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제시
- * 다만, 관계 공무원이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안내하기

- 어린이집 현관 입구에서 도착을 알린 후 안내를 받아 입실

- 원장실 또는 사무실에서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모니터링 내용 안내 및 협조 당부, 간략하게 모니터링 지표 소개

<예시>

안녕하세요? 부모모니터링단 000입니다. 모니터링에 앞서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점검 영역은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모두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항목에 따라 문서 및 관찰, 보육교직원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약 00분에 걸쳐 모니터링을 시작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실시

- 건강·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의 지표별 모니터링 실시. 지표에 따라 관찰과 면담, 문서 등의 확인방법 준수
- 각 모니터링 지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모니터링 도중, 지표에서 안내가 가능한 부족 사항은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현장개선지도 실시. 지표의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자율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어린이집 이의제기 사례가 없도록 주의)
- 부모는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전문가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문가로 하여금 전달
- * 부모 개인의 의견을 보육전문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
- 모니터링 실시 중, 건강·급식·위생·안전·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피해가 우려되어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당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반드시 당일 통보
- 모니터링은 어린이집당 2시간 내외에서 실시하되, 어린이집 규모, 모니터링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모니터링 일과 진행 예시- 1개소 기준>

소요 시간 (총 2시간)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10분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인사 ° 어린이집의 전체 분위기 및 현황 파악 ° 모니터링 지표항목 및 점검방법 안내
100분	° 건강관리 모니터링 (건강검진 및 관리, 응급조치 체계) ° 급식관리 모니터링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및 식자재관리) ° 위생관리 모니터링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 안전관리 모니터링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10분	° 관찰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단 상호 논의(평가) ° 원장(부재 시 주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안내하며 향후 조치사항을 안내(결과보고서 서명받기)

○ 모니터링 종료

- 모니터링 후 빠진 항목과 지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모니터링 진행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또는 보육교직원) 확인한 후 결과보고서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
 - * 원장의 확인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사 등이 대리 서명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확인 후, 사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 시군구청 등의 판단에 따라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음
- 모니터링이 끝났음을 알리고,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후 마무리 인사

<예시>
모니터링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모니터링 과정 중 안내해 드린 사항은 꼭 확인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총평 예시>

총괄 의견	* 우수한 영역 또는 미흡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우수)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양호 - (미흡) 조리직원의 위생복과 위생모 등 착용 미흡 * 어린이집 모니터링 이후 전반적인 총괄 의견 -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우수하나 식자재 및 조리직원 위생 등 위생관리 영역이 미흡함
특이 사항	*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사항이나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는 등의 위급한 상황 기재 - 놀이 시설물 등 아동상해 위험 즉시 제거 필요 - 아동학대 사실 발견 - 변질된 식자재를 보관하여 아동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차량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인 경우 등

□ 모니터링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총괄의견과 특이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
 - * 부모와 전문가가 협의하되, 전문가가 직접 작성
- 모니터링 현장에서 결과보고서의 문항에 바로 확인사항 표시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항목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평가(√)			현장개선 지도	비고
			우수	보통	미흡		
1. 건강관리	①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연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건강검진 보육교직원 수 (전체 ____명) ☐ 건강검진결과서 보관 여부	(2)	(1) √	(0)	부모에게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 안내	
	②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식중독 예방 안내자료 ☐ 감염병 예방 안내자료	(2) √	(1)	(0)		

* 현장개선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현장개선지도'에 간략 기술

* 기타 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에 작성

○ 결과보고서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센터로 제출
-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하되,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사실을 통보

2. 컨설팅 활동방법

□ 컨설팅 준비

○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 모니터링 결과 미흡 어린이집(필수 선정)
- 어린이집의 컨설팅 자율 신청
- 모니터링 결과 일부 영역(건강, 급식, 위생, 안전)에서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컨설팅 실시
 - * 시도 및 시군구청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논의 후 판단
- 모니터링 결과 우수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 관리 필요

○ 어린이집 방문 일정 협의

- 컨설턴트는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

<예시>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000입니다. 부모 모니터링 실시 후 00어린이집의 컨설팅이 필요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식자재 관리'와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 항목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언제 방문하면 좋을까요?

- 1일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컨설팅하며, 컨설팅 점검 내용에 따라 컨설팅 어린이집 개소 수 조정 가능

○ 컨설팅 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확인

- 시·도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은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컨설턴트에게 전달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집의 컨설팅 필요 지표 확인

□ 컨설팅 진행

○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현관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

○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미흡 항목 외의 분야에 대해 컨설팅 실시 가능
 - * 다만, 모니터링 지표 범위 내에서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항목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
- 컨설팅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또는 보육교직원) 확인한 후 결과보고서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
- 어린이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추가 실시 가능(1→2회), 컨설팅 이후 보육품질이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 부모모니터링 실시 가능
- 2차 컨설팅의 경우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마무리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컨설팅 항목 수와 총괄 의견 등을 추가로 기재
-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도 및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시, 센터에 제출

IV. 부모모니터링 지표 해설

IV 부모모니터링 지표 해설

1.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근거 및 방향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령 법령, 보육사업안내 근거
 - 2017년 '부모 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음
 - 영유아를 위한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4가지 영역 모니터링
- 부모, 전문가,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 투명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 모니터링 후 현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컨설턴트가 직접 어린이집을 컨설팅하는 사후관리체계 연계
- 모니터링 지표 개선
 - 유사·중복 지표를 통합·조정(39→30개)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지표 추가 등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지표로 개선

2. 부모모니터링 세부 지표 해설

-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의 4영역, 11항목, 30개 지표
- * 지표에 따라 2점~5점 부여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 건강검진 및 관리 · 응급조치 체계	· 식단 및 영양관리 · 조리 및 식자재 관리	· 급식 위생관리 · 조리실 청결 · 시설·비품 위생	· 물리적 환경관리 · 인적 환경관리 · 차량 안전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건강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 서	관 찰	면 담	확인자료
1.건강검진 및 관리	① (2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결과서
	② (2점)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안내자료
2.응급조치 체계	① (2점)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응급처치동의서 (부모동의 및 조사서), 응급의료기관 연락망
	② (4점) 사용기간 내의 비상약품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		
	③ (2점)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한다.	○		○	감염병 등 관리대책

□ 급식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 서	관 찰	면 담	확인자료
3.식단 및 영양관리	① (2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한다.	○	○		식단표 (급식 시행 기록)
	② (2점)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			식단표 (급식 시행 기록)
	③ (4점) 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	식품 알레르기 조사자료, 반영여부 기록
4.조리 및 식자재관리	① (4점)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② (4점)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 보관, 식품구입(입고)일자, 유통기한 등)을 준수한다.		○		
	③ (4점) 식자재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위생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 서	관 찰	면 담	확인자료
5. 급식위생 관리	① (4점)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		
	② (2점)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		
	③ (4점)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젓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		
6. 조리실 청결	① (5점)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② (5점)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7. 시설·비품 위생	① (5점)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과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② (5점)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③ (2점)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		

□ 안전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 서	관 찰	면 담	확인자료
8.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① (5점)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② (2점)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	○	비상시 대처방안
9.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① (4점)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			영유아 안전교육·소방훈련 계획 및 실시기록
	② (2점)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기록
	③ (2점) 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	귀가동의서(부모동의 및 조사서)
10. 차량 안전관리	① (4점)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 및 차량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통학차량 신고필증 차량안전점검표
	② (4점)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한다.	○		○	차량안전수칙
11. 아동학 대예방 및 조치	① (5점)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체교육을 진행한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기록
	② (4점)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	
	③ (2점)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안다.			○	
	④ (2점)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정통신문 등

1) 건강관리

1-①	건강검진 및 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은 신규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따르며, 그 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같음
-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은 건강검진결과서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서(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 포함 실시(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필수 실시, 단 집단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실시 권장)
- * 보육실습생과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파견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같음 가능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결과서(신규 보육교직원은 채용신체검사서 등)

평정 기준

우수(2)	보육교직원 현원 90% 이상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가 보관된 경우
보통(1)	보육교직원 현원 70~90% 미만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가 보관된 경우
미흡(0)	보육교직원 현원 70% 미만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모두 포함 (지표 설명 부분 참고)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
예) 2016년 1월 건강검진 실시, 2017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됨

❖ 참고자료

-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시 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에 준함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

- 검사항목 : ①문진과 진찰 ②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구강검진 ⑤건강위험평가
⑥인지기능장애 검사 ⑦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1-②	건강검진 및 관리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내용 및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안내 내용(예시):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방법,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대처방법 등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안내 자료(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자료 등)

평정 기준

우수(2)	식중독 및 감염병 안내자료를 숙지하고 있고,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경우
보통(1)	식중독 및 감염병 안내자료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경우
미흡(0)	식중독 및 감염병 안내자료가 있으나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어린이집의 '감염병 관리 대책' 내용 중 일부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거나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 안내문을 가정에 안내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가정통신문 예시

수두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원에서 수두 유행이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수두 예방 및 전파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두란

수두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의 피부병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수두 환자와 접촉 후 수 발생까지는 10~21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수두의 증상은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1~2일간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발진은 얼굴에서부터 몸통과 팔다리로 퍼지는데 일반적으로 가려움을 동반하고 물집의 형태에서 농포로 바뀌고 차츰 가피(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합병증 없이 회복됩니다.

수두는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등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수두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아동들은 수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수두에 걸릴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피부병변의 수도 적고 짧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두 예방접종의 중요성

귀댁의 자녀가 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수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수두 환자와 접촉한 후에도 3일 안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하여도 증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 자녀가 수두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1. 의사의 진찰을 받고 가족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합니다.
2. 담임선생님에게 자녀가 수두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수두 예방접종력이 없고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등원을 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합니다.
4. 모든 피부병변과 상처는 깨끗이 관리하고 2차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가족 중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임신부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어린이집 원장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사업관리지침.

2-①	응급조치 체계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따라서 어린이집은 가까운 지역 내 의료기관 연락망과 응급처치 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
- ☞ 응급의료기관 연락망 비치(눈에 잘 띄는 곳) 확인

평정 기준

우수(2)	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이 비치되어 있고, 영유아 현원 90%이상의 응급처치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를 구비한 경우
보통(1)	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이 비치되어 있고, 영유아 현원 70~90% 미만의 응급처치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를 구비한 경우
미흡(0)	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이 미비치 또는 영유아 현원 70% 미만의 응급처치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를 구비한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응급처치 동의서 필수 기재 사항 : 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
 - 비상연락망 등 변경 내용 반영하여 관리함
 - 응급처치 동의서는 부모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귀가동의서 등과 통합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부모동의 및 조사서로 통합 관리 가능)
- '응급의료기관'의 연락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 참고자료

부모동의 및 조사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사업지침 등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내용에 동의여부를 빠짐없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기본 정보>

성명	(남/여)	반이름	
주소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영유아와의 관계	연락처

1.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

구분	처리내용
응급처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기관지점의료기관명이나 보호자지정의료기관명)으로 수송해주시십시오.
귀가동의	-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13세 미만(초등학생) 형제·자매와만 등·하원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하원방법 : □ 보호자 동행 □ 차량(어린이집) - 차량이용시 등하원 시간 : 등원(시 분), 하원(시 분) (필요시 기재) - 부모의 인계보호자 : (필요시 기재)

2.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여부 : 참여하지 않음 □ 참여함(해당경우에만 아래 서식 작성) □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명칭	내용	실시 횟수 (주·월)	요일	운영시간	비용(원)	
		회		~		
		회		~		
		회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음

3. 식품알레르기 조사

어린이집 급·간식 제공 시 식품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영유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해당식품과 대체가능 식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알레르기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레르기 증상	대체가능 식품

※현재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없으나 이후 증상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관련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활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 3자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영유아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강검진정보, 사진 등	영유아보육활동, 건강관리, 가정과의 연계 긴급한 상황 시 대처	1년간 보관, 이후 폐기 (영유아 퇴소 시 즉시 폐기)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CCTV 영상 확인 요청자	CCTV 영상	아동의 사고 시 발생 상황 파악	영상을 확인하는 기간 (보조매체로 인해 영상을 보관할 경우 영상 저장 시, 보유기간을 정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어린이집 운영내용 확인 및 협조사항

- 신입 및 재원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운영안내서)을 통해 안내해드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모님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우리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00어린이집 모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2.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및 인계규정
3. 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4.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환아처리지침,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등)
5. 부모동의 및 조사서 작성 안내(귀가동의, 응급처지동의, 식품알레르기 관련, 개인정보활용 등)
6. 상해, 화제, 배상보험 가입 안내
7.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 갖는 책임한계에 관한 규정
8.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맞춤형 운영기준 포함)
9.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아동학대 예방지침 포함)

※ 위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00 어린이집(0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유아명 : 보호자(서명):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2-②	응급조치 체계
	사용기간 내의 비상약품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지표 설명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 등을 비치해야 함. 어린이집 내의 모든 비상약품 등은 사용(유효)기간 내의 약품이어야 하나, 사용(유효)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비상약품은 유통기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됨.

<비상약품 종류의 예시>

의료용 재료	외용제	주의 사항
봉대, 소독솜,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 거즈, 삼각봉대, 탄력봉대, 칼, 가위, 핀셋, 일회용 장갑, 부목류	과산화수소수, 항생제 외용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베타딘, 근육용 마사지 연고, 생리식염수	어린이집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비상약품의 종류는 예시로 이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확인 방법

관찰

☞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준수

※ 사용(유효)기간 적용받지 않은 비상약품은 대상에서 제외

☞ 안전한 장소(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 별도 보관

평정 기준

우수(4)	비상약품 구비, 안전한 장소 별도 보관, 사용(유효)기간 준수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통(2)	비상약품 구비, 안전한 장소 별도 보관, 사용(유효)기간 준수 중 한 가지만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0)	비상약품 구비, 안전한 장소 별도 보관, 사용(유효)기간 준수 중 두가지 이상 미충족하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종류별로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비상약품의 종류는 점검사항이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관련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비
-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은 모두 사용기간(유효기간)내의 약품이어야 하며, 어린이집 내 모든 비상약품은 유효기간을 지켜야 함
 - 자주 사용하지 않는 비상약품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만약 구급상자 등의 위치가 영유아 손이 닿는 곳이라면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영유아가 꺼내거나 만질 수 없어야 함

2-③	응급조치 체계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어린이집은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감염병 관리 대책 내용(예시):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대처방법 (보건소 등 연락망), 보육교직원에 대한 조치방법 등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육사업안내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한다.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이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확인
- ☞ 식중독 및 감염병 등 발생 시 시군구청 및 보건소 신고 인지 여부

평정 기준

우수(2)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와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사항 인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통(1)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사항 인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경우
미흡(0)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사항 인지 모두 미충족하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면담시 활용)

- ▶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시 시군구청 및 보건소 신고 의무사항 관련 인지 여부 확인
 -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감염병 발생 시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 참고자료

- 감염병 등 관리 대책 내용(예시)

[대처방법]

- 감염병이란 감염된 사람과의 직·간접적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환으로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많은 영유아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접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
- 법정 감염병이나 계절별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완치된 후 등원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함
- 어린이집에서 감염병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영유아를 즉시 분리 보육하며 부모님께 연락을 취함

[영유아기에 발생 가능한 법정 감염병]

- 세균성 이질,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

[보육교직원 감염병 발생시 조치 방법]

- 보육교직원이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

■ 식중독 발생시 위기 대응

식중독 발생 신고 요령

- ◎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예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http://www.mfds.go.kr/fm/index.do>)

■ 식중독 신속보고 체계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고 관리 시스템 입력·보고 → 유관기관에 발생사실
동시 전파

[발생 신고]

- 의심환자 발생시설 운영자, 이용자, 의사·한의사 → 보건소

[발생 보고]

- 시·군·구 → 시·도, 식약처 * 식약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http://minwon.mfds.go.kr>)에 입력

2) 급식관리

3-①	식단 및 영양관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한다.

지표 설명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사용할 수 있음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관찰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활용 가능(식단표 출처 명확히 함)

☞ 급간식 실시 기록 확인(식단표와 제공된 급·간식의 일치 여부)

평가 기준

우수(2)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식이 제공되고, 변동사항(10% 미만)이 발생 시 그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식이 대부분 제공되고 있으며, 변동사항(10% 이상) 발생 시 그 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는 경우
미흡(0)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가 없거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는 있으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당일 식단표를 확인하고, 실제 급간식에서 식단표대로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관찰로 확인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여부는 100인 미만의 경우에는 식단표 출처 꼭 확인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영양사 작성 여부 확인
- 당일 생일잔치 등의 행사로 인해 생일잔치 음식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더라도 식단표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단표대로 재료를 구입할 수 없거나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식품군 내 일부 변경 가능함(운영일지 등에 급간식 변동사항 기록 확인)
 - 일주일 식단표로 확인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자료 확인

❖ 참고자료

- 대체식품 활용
 - 좋은 예: 소갈비구이→제육볶음(같은 식품군인 고기·생선·계란·콩류 음식으로 대체)
 - 나쁜 예: 계란말이→시금치나물
(고기·생선·계란·콩류 음식을 다른 식품군인 채소류 음식으로 대체)
 - 식단 변경을 위한 음식 예
 - (곡류) 쌀밥, 현미밥, 잡곡밥, 수수밥, 기장밥, 조밥 등
 - (고기·생선·계란·콩류) 제육볶음, 돼지갈비, 불고기, 닭볶음탕, 고등어조림, 달걀찜 등
 - (채소류) 시금치나물, 콩나물, 가지볶음, 호박나물 등
- *출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2). 지역아동센터 건강급식 길라잡이

식단 및 영양관리

3-②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지표 설명

간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고,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되 한 주에 동일 품명의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 간식을 1일 2회(오전과 오후) 제공하는지 확인(식단표)
-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는지 확인(식단표)

평정 기준

우수(2)	간식이 오전·오후로 제공되고,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3회 이상 제공되는 경우
보통(1)	간식이 오전·오후로 제공되나,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3회 미만 제공되는 경우
미흡(0)	간식이 오전·오후로 제공되지 않거나, 주로 인스턴트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간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총 2회 제공하여야 함
 - 식단표에 '오전'과 '오후' 간식이 있는지 확인
- 주 3회 이상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위주의 간식 제공
 - 식단표나 제공 기록에 과일(사과, 배, 수박, 딸기, 참외, 포도 등)과 채소(감자, 고구마, 옥수수, 오이, 토마토 등)가 주 3회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한 형태(생과일, 샐러드, 찐 감자, 군고구마 등)
 - 한 주에 동일 품명의 과일 및 채소 지양
(간식으로 바나나만 일주일에 3회 제공하는 등은 인정 안 됨)
- 일주일분 식단으로 확인한 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 식단표를 확인하여 판단

❖ 참고자료

- 제철농식품 정보

월	농식품
1월	감귤, 레몬, 우엉
2월	시금치, 연근, 유채나물, 천혜향, 파래, 한라봉
3월	달래, 돌나물, 딸기, 미나리, 미역, 비트, 세발나물
4월	고사리, 깍질콩, 냉이, 더덕, 두릅, 머위, 쑥, 씬바귀, 아스파라거스
5월	고구마순, 마늘종, 방풍나물, 쑥갓, 양배추, 오디, 죽순, 쪽파, 취나물, 하귤, 호박잎
6월	곤드레, 근대, 매실, 복분자, 부추, 산딸기, 애플망고, 열무, 파브리카
7월	가지, 감자, 파리고추, 도라지, 비름나물, 아로니아, 애호박, 양파, 오이, 옥수수
8월	멜론, 방울토마토, 복숭아, 수박, 신선초, 알로에, 여주, 참나물, 참외
9월	고구마, 단호박, 대추, 무화과, 배, 야콘, 오미자
10월	갯, 고들빼기, 땅콩, 머루, 모과, 밤
11월	감, 늙은 호박, 마, 무, 배추, 석류, 열갈이배추
12월	당근, 브로콜리, 콜라비, 콜리플라워, 키위

*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정보누리(<http://www.foodnuri.go.kr/>)

	식단 및 영양관리
3-③	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지표 설명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근거

보육사업안내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 식품 알레르기 조사자료(알림장, 면담자료, 가정통신문 등)
- ☞ 부모 요구 반영한 급간식 실시 기록(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 재원 시 필수 확인)

평정 기준

우수(4)	모든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급·간식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보통(2)	모든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나, 급·간식 반영이 미흡한 경우
미흡(0)	모든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조사 기록 확인
 - 알림장, 부모 면담 자료, 가정통신문 등에서 영유아 식품 알레르기 여부 조사한 자료 확인(조사 여부만 확인하면 됨)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식품을 제공했는지 여부 확인(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다른 식품으로 대체 가능)
- 면담 시 질문 예시
 - 영유아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까?
 - 영유아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떻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 식품 알레르기 식품별 주의사항 및 대체식품

식 품	식품별 주의사항 및 대체식품
난류	■ 주의사항 : 과자나 케이크 등 기호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대체식품 :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두부
우유	■ 주의사항 :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칼슘은 흡수율이 낮음. 충분한 칼슘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칼슘제 섭취를 고려. 과자, 케이크, 초콜릿등에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 ■ 대체식품 : 두유
메밀	■ 주의사항 : 식품성분표를 반드시 확인 ■ 대체식품 : 쌀, 감자
땅콩	■ 주의사항 : 소량으로도 반응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견과류에 대한 반응도 확인해 볼 것 ■ 대체식품 : 깨
대두	■ 주의사항 : 대두를 이용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두부, 두유, 콩나물, 된장, 고추장, 간장, 콩기름, 콩기름을 이용한 튀김·과자 등) *정제된 기름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으나 중증의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반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 대체식품 : 두부→계란, 두유→우유, 콩나물→타채소, 된장·고추장·간장→소금, 콩기름→포도씨기름
밀	■ 주의사항 : 면류, 과자, 빵 뿐만 아니라 시판용 된장, 고추장, 간장에도 함유 ■ 대체식품 : 쌀, 감자
생선	■ 주의사항 : 생선을 제한하는 경우 비타민D 섭취가 부족할 수 있음 ■ 대체식품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두부, 계란 등 단백질 식품
게·새우	■ 주의사항 : 소량으로도 반응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 견세우로 육수를 내는 경우도 주의 ■ 대체식품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두부, 계란 등 단백질 식품
돼지고기	■ 주의사항 : 고기를 제한하는 경우 철 흡수 저하로 빈혈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체식품 : 쇠고기, 닭고기, 생선류, 두부, 계란 등 단백질 식품
복숭아	■ 주의사항 : 사과, 자두, 체리, 배에도 알레르기가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 ■ 대체식품 : 수박, 참외
토마토	■ 주의사항 : 케첩, 토마토소스 등에 주의 ■ 대체식품 : 소스류→소금, 생과/주스→타과일
아황산염	■ 주의사항 : 주로 방부제나 식품표백제로 사용되므로 식품성분표를 반드시 확인. 간편근·간우영·간도라지 등 식품성분표가 없는 경우도 주의 ■ 주의식품 : 냉동감각류, 가공감자, 말린과일, 포도주, 간편근, 간우영, 간도라지 등

*출처: 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http://ccfsm.foodnara.go.kr/bupyeong>)

조리 및 식자재관리

4-①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당일에 조리하여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영유아에게 제공된 음식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되어야 함. 또한 배식 후 남은 음식은 폐기 처리하는 등 당일 내 모두 소비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 방법

관찰

- ☞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전량 폐기 여부
- ☞ 당일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냉장고 등)하는지 확인(전일 식단으로 확인)

평정 기준

우수(4)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 소비하여 남은 음식이 없는 경우
보통(2)	배식하고 남은 음식(국 등)을 재배식 하지 않으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
미흡(0)	당일 배식하고 남은 음식(국 등)을 재배식 하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영유아에게 배식된 음식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사가 끝나면 폐기하여야 하며, 배식 후 남은 음식(잔식)은 당일소모를 원칙으로 하여 다시 배식하지 않고 전량 폐기함
- 전일 식단표 등을 확인하여 냉장고 등에 전날 제공되었던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전일 식단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김치류 및 장류 등 저장음식의 경우에는 당일 소비원칙에 해당 안 됨

조리 및 식자재관리	
4-②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 식품구입(입고)일자, 유통기한 등)을 준수한다.

지표 설명

원장 등은 식자재의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고 식품에 표시된 보관규정에 따라 냉동·냉장·실온 보관하며, 유통기한 무 표시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함(배추 등 1차 농산물은 유통기한 무 표시 가능하나, 구입(입고)일자는 표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 표기 제품 제외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 식자재 구입(입고)일자 기입 여부, 보관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관(냉동, 냉장, 실온 등)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 확인
 - 해당 조리실(공공기관용, 사회복지관용, 유치원용 등) 내 모든 식자재 포함
 - 가정어린이집에서 살림을 병행하는 경우, 인가 공간 내 모든 식자재(살림용 포함) 포함

평정 기준

우수(4)	모든 식자재가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고, 보관규정(냉동냉장, 실온보관, 구입(입고)일자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2)	모든 식자재가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보관규정(냉동냉장, 실온보관, 구입(입고)일자 등) 중 한 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미흡(0)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식자재가 있거나, 보관규정(냉동냉장, 실온보관, 구입(입고)일자 등) 중 두 가지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어린이집 내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을 준수해야 함(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 표기 제품은 제외)
- 배추 등 1차 농산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 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입(입고)일자는 표시함(봉투나 상자 등 용기에 표기)
 - 다만, 조리 준비 등을 위해 바구니나 조리용구에 꺼내놓는 경우는 제외
- 구입(입고)일자 표시 여부 등만 관찰로 확인하며, 영수증 등 회계장부는 확인하지 않음
- 우유와 같은 유제품, 계란 등은 반드시 냉장 보관

❖ 참고자료

- 냉장·냉동고는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냉장 0~5℃, 냉동 -18℃
- 실온(1~35℃) 보관제품의 경우 냉장보관(0~10℃)의 온도범위를 포함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여도 보관방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된다.
- 다만, 하절기에는 창고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가급적 냉장실에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 주식류의 최적 보관기간

품명	보관온도(℃)	최적보관기간(최장보관기간)	비고
쌀	15~25℃	3개월	곰팡이 발생 전까지 사용가능
보리쌀	15~25℃	3개월	
밀가루	15~25℃	3개월	
식빵	15~25℃	48시간	
건면	15~25℃	4개월	
라면	15~25℃	3개월	
시리얼	15~25℃	(6개월)	
마카로니, 스파게티	15~25℃	(2~4개월)	

■ 채소류의 최적 보관기간

품명	보관온도(℃)	최적보관기간(최장보관기간)	비고
엽채류	4~6℃	1일	채소를 씻은 상태
	15~26℃	3일	채소를 씻지 않은 상태
근채류	4~6℃	2일	
	15~25℃	3개월	무 : 보관일 7일
과채류	7~10℃	5일	
	15~25℃	3일	무 : 보관일 7일
감자류, 뿌리채소류	20℃	(7~30일)	씻지 않은 상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4-③	조리 및 식자재관리
	식자재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지표 설명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함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확인 방법

관찰

- ☞ 식재료 보관 장소가 곰팡이나 습기 없이 청결한지 여부
- ☞ 식품·소모품의 구분 관리 여부

평정 기준

우수(4)	식재료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식품과 소모품이 분리·보관되어 있는 경우
보통(2)	식재료 보관 장소가 청결하나, 식품과 소모품 일부를 분리·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미흡(0)	식재료 보관 장소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3) 위생관리

5-①	급식 위생관리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지표 설명

조리사,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모, 위생복(전용 앞치마와 전용 머릿수건 등 사용가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또한 머리카락은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위생모와 위생복을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 단,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조리 시 위생화 착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확인 방법

관찰

- ☞ 조리직원(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등)이 위생모와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여부
- ☞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평정 기준

우수(4)	조리 직원이 조리 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고,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2)	조리 직원이 조리 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중 일부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단,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음)
미흡(0)	조리 직원이 조리 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모두 착용하지 않거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며, 위생화의 경우에는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조리 시에는 착용해야 함
- 위생모와 위생복 대신에 전용 앞치마와 전용 머릿수건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조리 목적 외에 착용해서는 안 됨
- 위생모와 위생복 착용 시, 머리카락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고, 위생복도 바르게 착용해야 함
 - 위생모와 위생복 착용 외에 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
- 조리직원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 조리 시 음식에 장신구 등이 담기거나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

참고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5-②	급식 위생관리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지표 설명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여야 하며,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 급·배식 전용도구(집게, 국자 등)의 위생상태 확인
- ☞ 배식과정의 위생 상태(개별 음식별로 집게 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배식, 개별 식기 사용, 테이블 청결상태, 복장의 청결상태 등) 확인

평정 기준

우수(2)	급·배식 도구가 모두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인 경우
보통(1)	급·배식 도구 일부가 청결하지 않거나 급·배식 과정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
미흡(0)	급·배식 도구 일부가 청결하지 않고, 급·배식 과정이 미흡한 경우

TIP

❖ 참고자료

- 배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배식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적절한 배식전용 도구(집게, 국자 등)를 사용하여 손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음식을 옮기거나 보관할 때 청결하고 소독된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위생적으로 배식한다.
- 배식도구는 깨끗이 세척 및 소독해서 사용한다.
- 배식용 앞치마와 보육용 앞치마는 구분해서 사용한다.
- 영유아를 위한 식사 및 간식에 사용하는 식탁은 배식 전후로 항상 청결하게 위생관리한다.
- 배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각의 음식마다 전용 집게 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배식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5-③	급식 위생관리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젖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함. 또한 우유(모유), 이유식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컵, 젖병 등의 청결이 유지되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 정수기의 위생상태, 우유(모유), 이유식의 관리상태 및 컵, 젖병 등 관리·소독상태 등 확인
- ☞ 우유(모유)는 냉장보관. 남은 우유(모유) 폐기 등 확인

평정 기준

우수(4)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모두 위생적이며, 컵·젖병 등이 청결한 경우
보통(2)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컵, 젖병 등 관리에서 한두 가지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
미흡(0)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컵, 젖병 등 관리에서 세 가지 이상 청결상태가 미흡한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의 위생상태 확인
- 정수기 사용 시, 정수기 청결상태를 관찰로 확인
- 컵은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용
- 영유아 개별 컵 사용 시에는 보육교사가 수시로 청결 상태 확인하여 관리
- 수유용 젖병과 젖꼭지는 1회 사용한 후 소독하여 관리
- 우유(모유), 이유식 등은 반드시 냉장 보관

❖ 참고자료

- 음용수 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
 - 정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교환 등으로 수질 관리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함
- 우유(모유) 및 이유식 보관
 - 우유는 겨울철에도 반드시 냉장보관 하고 실온에 방치하지 않음
 - 모유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바로 버려 상온에 방치했다 다시 먹이는 일이 없도록 함
 - 가정에서 가져 온 이유식이 있다면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먹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제공함
 -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

6-①	조리실 청결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리실 내부에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조리대, 개수대, 냉장고 등 또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여야 함.

후드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 등에는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조리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또한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 조리실 내(바닥, 벽, 천장 등) 청결 상태 확인
- ☞ 조리실 설비(조리대, 개수대, 식기수납장 등) 및 주방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의 청결 상태 확인
- ☞ 후드·환풍기/냉난방기/방충망의 설치 및 작동, 청결·위생관리 확인

평정 기준

우수(5)	조리실 공간 및 설비, 주방가전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후드·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3)	조리실 공간 및 설비, 주방가전 중 한두 군데 청결·위생 상태가 미흡한 경우, 후드·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상태 또는 청결 상태가 한두 군데 미흡한 경우
미흡(0)	조리실 및 설비, 주방가전의 청결상태가 세 군데 이상 미흡한 경우, 후드·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 상태 또는 청결 상태가 세 군데 이상 미흡한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조리실 바닥, 벽, 천장 등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지 확인
- 조리실 내부에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어야 함
-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청결 및 위생상태 모두 관찰로 확인
- 조리실 설비(조리대, 개수대, 식기수납장 등) 및 주방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조리실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후드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음 (후드, 환풍기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함)
- 냉·난방기의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철에 사용 가능 (이동용 냉·난방기의 경우에는 봄, 가을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
- 외부와 연결된 창문에는 반드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도 방충망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면 인정 안 됨
-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의 경우 작동되는지 확인

6-②	조리실 청결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조리도구의 청결을 위해 식기, 도마, 칼, 행주 등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함.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 식기, 도마, 칼, 행주 등 주방용구 세척, 살균 및 소독 여부 확인
- ☞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의 구분사용 확인

평정 기준

우수(5)	모든 조리도구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칼·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통(3)	칼·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조리도구 및 비품의 청결·위생 상태가 한두 가지 미흡한 경우
미흡(0)	칼·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조리도구 및 비품의 청결·위생 상태가 세 가지 이상 미흡한 경우

TIP

❖ 참고자료

- 세척과 소독
 - 세척이란, 세척 대상물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제 제품에 표시된 사용 기준에 따라 희석한 액을 스펀지 등에 묻혀 세척하는 것을 말함.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세척수로 충분히 행굼
 - 살균소독에는 열탕소독, 화학소독이 있음. 열탕소독은 77℃ 30초 담그는 것을 말함. 화학소독은 차아염소산나트륨 200mg/ℓ 용액에 5분간 살균소독함
 - 세척 및 살균소독 이후에는 조리 기구들을 청결한 곳에 보관함
 - 행주, 수세미, 고무장갑의 관리 요령
 - 행주: 용도별로 넉넉히 비치하여 번갈아 사용하며 다른 세탁물과 혼합세탁 하지 않음
 - 수세미: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살균소독하거나 건조시킴
 - 고무장갑: 조리용, 세척용으로 구분. 소독 후 용도별로 겹치지 않게 보관
- *출처: 중앙보육정보센터(2009).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7-①	시설·비품 위생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과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은 매일 청소하여 청결해야 함.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하고, 현관, 복도,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함. 모든 보육실의 바닥, 창문, 교구장, 사물함 뒤편 등의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함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놀잇감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특히 영아들이 자주 물고 빠는 놀잇감의 경우 더욱 자주 세척해서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방법

관찰

- ☞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의 청결상태 확인
 - * 기본 공간 : 보육실, 화장실(세면실), 조리실, 현관, 복도(통로)
 - * 기타 공간 : 계단, 유희실, 교사실, 원장실, 교재교구실 등
- ☞ 보육실 놀잇감(바구니 포함)의 청결상태 확인

평정 기준

우수(5)	어린이집 내 기본공간과 기타 공간, 놀잇감(90% 이상, 바구니 포함)이 모두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3)	어린이집 내 기본공간은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기타 공간과 놀잇감 일부(10~50%, 바구니 포함)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미흡(0)	어린이집 내 기본공간과 기타 공간이 모두 청결하지 못한 경우, 놀잇감(50% 이상, 바구니 포함)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보육실의 놀잇감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관찰함
 - 예) 블록이나 소꿉놀이를 모두 꺼내서 확인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지양함

❖ 참고자료

▪ 놀잇감 세척관리 방법

- 원목 놀잇감
 - 미지근한 물이나 찬 물수건으로 수시로 닦아 준다.
 -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하거나 그늘에 말린다.
- 형질 놀잇감
 - 수시로 먼지를 털어내고 전용세제를 풀어 손세탁한다.
 - 건조기가 내장되어 있어 물세탁이 어려운 경우 먼지를 자주 털어내도록 한다.
- 플라스틱 놀잇감
 -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한 후 따뜻한 물로 행군다.
 -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그늘에 말린다.
- 고무 놀잇감
 - 영유아용 세제나 샴푸를 이용해서 스펀지로 닦고 행군다.

*출처: 중앙보육정보센터(2009).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7-②	시설·비품 위생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지표 설명

영유아마다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사용하며,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 일광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칫솔과 양치컵은 사용 후 세탁 및 세척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칫솔 관리 시에는 영유아의 개별 칫솔이 서로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소독기 사용 시에는 소독기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침구, 기저귀,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방법

관찰

- ☞ 영유아마다 개별 물품(이불, 베개, 요, 칫솔, 양치컵) 사용 여부 확인
- ☞ 개별침구 및 영유아용 칫솔, 양치컵의 청결 상태 확인
- ☞ 소독기 사용 시 청결 상태 확인(소독기 사용은 의무가 아님)

평정 기준

우수(5)	영유아가 개별물품(이불, 베개, 요, 칫솔, 양치컵)을 사용하고, 각각의 물품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3)	영유아 개별물품(요, 양치컵) 중 한 가지 이상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전체 개별물품 중 한두 가지의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
미흡(0)	영유아 개별물품(이불, 베개, 칫솔) 중 한 가지 이상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전체 개별물품 중 세 가지 이상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영유아 개별로 칫솔과 양치컵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칫솔끼리는 서로 맞닿아 있어서는 안 됨
- 칫솔과 양치컵 청결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곳(바구니, 쟁반, 소독기 등)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영유아 양치 이후 칫솔과 양치컵 상태를 관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미처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전이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청결상태 확인하여 모니터링에 반영함

❖ 참고자료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구의 위생적인 관리 방법
 - 영유아의 땀, 침 등 분비물, 대소변 등으로 침구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개별 침구 및 요 등은 주 1회 이상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개별 침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여분의 침구는 사용할 때마다 시트를 교체하거나, 세탁한 후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영아(만 0~1, 2세) :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아용 개별 침구는 너무 폭신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2017).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7-③	시설·비품 위생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표 설명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영유아가 생활하는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확인 방법

관찰

☞ 보육실 수시 환기 여부, 적절한 온도 유지 여부 확인

평정 기준

우수(2)	보육실의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1)	보육실의 환기, 온도 중 하나라도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미흡(0)	보육실의 환기, 온도가 모두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환기 등을 위하여 보육실에 반드시 공기청정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육실 창문을 열거나 청소를 하는 등 보육실 내 환기상태를 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 식사 후 창문을 열거나, 신체활동 이후 환기하는지 여부 정도
 - 주변에 공사장 등이 있거나 황사·미세먼지 주의가 예보 되는 등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육실의 온도는 너무 춥거나 더운 정도를 확인함
 - 영유아가 대부분 땀을 많이 흘리며 활동하는 데 전혀 온도 조절을 하지 않거나, 추운 보육실에서 영유아가 외투 등을 입고 활동하는지 등
- 실내 온도를 측정하거나 환기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련 문서를 확인하지는 않음

❖ 참고자료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

-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1년에 1회 이상 시설 내를 살균 소독함
- 환기설비, 팬,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함
- 실내를 충분히 환기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기록 보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 주변의 공사장, 실외의 살충 및 제초작업,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예보 등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보다는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함
- 조리실 및 화장실의 환풍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함
-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철 결로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경우에는 곰팡이 제거제 등을 사용하여 오염 부위를 제거한 후 환기를 실시하거나, 오염이 심각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곰팡이를 제거해야 함

* 출처: 환경부(2011).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4) 안전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8-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 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시설·설비(출입문, 가구 등) 및 놀이시설에 손끼임 방지, 모서리 보호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내에 감전, 미끄러짐, 추락위험 등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 영유아 놀잇감은 파손되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재질이 유해하지 않으며, 위험물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고, 영아가 삼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없어야 함.

* 위험물 예시: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실험용 알코올, 살충제, 방향제, 구강세정제, 사료, 성인용 화장품, 침핀, 건전지, 칼, 송곳, 스테이플러, 가시 식물,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번기 압축기 등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윗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 가구 등의 모서리가 매끄럽거나 모서리보호대 설치 여부
- ☞ 출입문, 창문 등에 안전장치(손끼임 방지 처리) 설치 여부
- ☞ 볼트와 너트 등 이음장치 상태, 출입문의 개폐 관리 확인
- ☞ 화장실, 계단 등의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
- ☞ 영유아 손이 닿는 곳의 전기콘센트 관리(안전덮개, 전선줄 정리 등) 여부
- ☞ 놀잇감이 파손되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는지, 칠이 벗겨져서 떨어지거나 문어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 영아가 사용하는 놀잇감의 크기(직경 3.5cm 이상)는 적절한지 등 확인
- ☞ 세면대 수도의 온수 온도가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수도밸브 등이 뜨거워서 화상요인이 없는지, 정수기의 온수사용에 안전장치가 되어있는지 등 확인
- ☞ 위험물이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평정 기준

우수(5)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 및 물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3)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놀잇감, 물품 중 한두 가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미흡(0)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놀잇감, 물품 중 세 가지 이상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전반적으로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임
- 모서리 보호대 등 안전장치는 출입문, 가구 등의 모서리가 날카로워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면 됨. 모든 출입문, 창문, 가구 등에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놀잇감 안전상태의 경우에는 파손 등으로 인해 영유아가 놀잇감 사용 시 다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보육실 등 영유아 보육활동 공간에서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함

❖ 참고자료

■ 어린이집 놀잇감 안전관리

- 영아가 사용하는 놀잇감의 크기(직경 3.5cm 이상)
- 베이거나 긁힐 수 있는 위험한 놀잇감 제공하지 않기
- 움직이는 놀잇감 사용시 바닥에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판 등 깔기
- 교구장에 있는 볼트, 너트, 못 등 분리되거나 파손된 놀잇감 즉시 보수하기
- 철이 벗겨진 블록이나 소꿉놀이 놀잇감 등 확인하기
- 여러 가지 탈 것 등의 놀잇감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 나무 놀이기구의 경우 페인트 등 수시로 점검하여 가시 등에 찰리지 않도록 보수하기
- 고장난 놀이기구는 즉시 보수하기

■ 어린이집 공간별 안전관리

현관 복도 계단 베란다	• 현관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틈새에 고무 등 안전장치 부착하기 • 신발장, 가구 모서리 등에 보호대 설치하기 • 전열판, 소화전 등에 잠금장치 하기 • 베란다 창문 주위에 영유아가 올라 갈 수 있는 의자나 물건 두지 않기 • 가구나 벽에 못이나 볼트, 너트 등이 빠져 있거나 돌출 여부 점검하기
보육실	• 블라인드의 끈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짧게 묶어 두기 •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 책상 등은 창문 가까이 두지 않기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덮어두고 꽂혀진 코드도 영유아에게 노출 되지 않도록 영역구성 시 주의하기 •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무거운 물건 걸어놓지 않기 • 무거운 교구는 교구장(수납장) 아래 부분에 보관하기 • 책상, 교구장 등의 뾰족한 부분은 모서리 보호대 등의 안전장치 부착하기 • 낮은 창문에 안전보호대 설치하기(방과 베란다 사이의 창문 턱 등, 가정어린이집)
화장실	• 화장실 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하기 •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하기 • 세면기, 변기, 욕조 등 모서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 화장실 라디에이터에 안전덮개 씌워 놓기 • 화장품이나 세제, 빨래비누, 샴푸, 청소도구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실외놀이터	• 바닥에 파인 곳이나 튀어나온 곳 등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기 • 실외놀이기의 볼트와 너트 등이 튀어나온 부분, 갈라진 틈 없는지 확인하기 • 모래놀이터 등에 유리파편, 깨진 조각 등 위험한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기

*출처: 중앙보육정보센터(2009).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어린이집에서의 위험한 물건 예시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 작업 시 찌르거나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칠판,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빗자루, 대걸레, 삽 등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만지면 다칠 수 있는 가시가 있는 식물(예: 선인장, 밤송이 등)
- 영아(만0~1세, 2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 자료
 -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예: 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영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예: 콩, 팥, 은행, 도토리 등)

- 위험한 물건이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성인의 지도하에 사용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2017).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8-②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지표 설명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비상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별표1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생략).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생략)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확인 방법

문서, 관찰, 면담

- ☞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안 수립(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역할분담 등)
- ☞ 비상사태 대비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여부

평정 기준

우수(2)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잘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보통(1)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의 설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거나, 비상 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보육교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흡(0)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의 설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비상 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문서는 '비상시 대처방안'만 확인하나, 반드시 대피요령,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는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소화기는 층마다 최소 1개씩은 구비해야 함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성인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함
 -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유도등에 따라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담으로 유도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부 확인
 -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 등에 짐을 쌓아두지 않아야 함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각 시설별 설치기준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름
- 면담시 질문 예시
 - 화재 등 긴급사태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보육교직원들은 비상시 역할을 알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

보육교직원 업무분장 및 비상시 대처방안

담 당	일반 업무 내용	환경정리 구역	비상 시 업무 내용
원장			
교사 공통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경우, 비상 시 업무 내용란에 재난대비, 안전사고, 아동학대 관련내용을 구분하여 포함 가능

비상시 대피요령

- 침착하게 대처한다.
- 총지휘자에게 보고한다.
- 119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
- 교직원은 비상 시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한다.
- 원아를 신속하게 인솔해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 남은 원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영유아들을 안정시킨다.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비상대피도(*어린이집의 건물현황에 따라 대피도 작성하여 부착)

■ 소화기 관리 방법

- 제조일자, 제조 회사명,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있는지, 국가검정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 외관상으로 녹이 슬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 약제가 굳지는 않았는지, 거꾸로 흔들어서 미세한 분말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 소화기와 소화기 점검표를 함께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 압력계 점검 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압력계의 지시침이 가리키는 수치를 확인한다.
- 지시침은 정상상태 시 녹색부분을, 과충전 상태 시 적색부분을, 압력미만 상태시 흰색 또는 노란색 부분을 가리킨다.
- ※ 과충전 상태의 소화기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분사 시 주의가 필요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여 정상 상태가 되도록 관리 하도록 함.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5).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 소방·재난·자연재해

9-①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상 안전교육 종류: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외에 물놀이, 보행법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교육)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확인 방법

문서

- ☞ 영유아 안전교육(3가지 이상) 및 재난 대비 훈련의 계획 및 실시기록 확인
- 소방훈련(재난 대비 훈련)은 매월 시행

평정 기준

우수(4)	영유아 안전교육이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3가지 이상) 실시되고, 소방훈련이 월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경우
보통(2)	영유아 안전교육이 다양하게(3가지 미만) 실시되지 않으나, 소방훈련이 월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경우
미흡(0)	영유아 안전교육이 다양하게(3가지 미만) 실시되지 않고, 소방훈련이 월 1회 이상 실시되지 않은 경우(또는 안전교육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교육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

TIP

❖ 참고자료

■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 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9-②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설명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함.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확인 방법

문서

-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기록 확인(연1회 이상)
 - 외부기관 교육 및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등 모두 해당함
 - 안전교육의 종류와 범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아동학대에방교육'과는 별개의 안전교육 1가지 이상 실시

평정 기준

우수(2)	모든(90%이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보통(1)	대부분(70~90% 미만)의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미흡(0)	일부(70% 미만) 보육교직원에게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9-③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지표 설명

영유아의 등·하원 시 반드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인계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귀가동의서'에 따라 보호자 확인 후 인계해야 함. 또한 영유아를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명 확인이 필요함

*귀가동의서 필수 기재사항: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 귀가동의서의 구비(필수 기재사항 기록 확인)
- ☞ 인계과정에 대한 면담(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아야 함)

평정 기준

우수(2)	모든(현원의 90%이상) 영유아의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1)	대부분(현원의 70~90%미만)의 영유아의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고,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미흡(0)	일부(현원의 70%미만) 영유아의 귀가동의서만 구비되어 있거나, 혼자 등하원 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TIP

- 면담 시 질문 예시
 - 영유아가 혼자 등하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하원 시 보호자를 확인 후 인계하고 있습니까? 등

10-①	차량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 및 차량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표 설명

통학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또한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와 교사는 개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차량에는 경광등,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관찰

평정 기준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항목 '우수' 평정

우수(4)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이 신고필증 및 차량안전설비를 구비하고 매일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2)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이 신고필증 및 차량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나 차량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흡(0)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이 신고필증 또는 차량안전설비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 ☞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 차량 안전설비(경광등, 소화기, 구급상자,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

TIP

❖ 참고자료

<차량안전점검표(예시)>

(점검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운행 전 점검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이 비치여부 및 비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하고 전·후방 시야지대에 영유아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행 중 점검	- 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육교사 등)이 탑승하는가?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가 있는가?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 후 점검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참고사항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의 올바른 선택방법

1.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2.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선택 방법은?

- 1) 먼저 통학차량의 승객석 안전벨트 종류를 확인한다.
(A) 2점식 안전벨트 (B) 3점식 안전벨트
- 2) 확인된 안전벨트 종류에 맞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한다.
(A) 2점식 벨트 → W2
(B) 3점식 벨트 → W1, W2
- 3) 안전인증(KC)된 제품인지 확인한다(안전인증서, 인증번호).
- 4) 제품 사용설명서를 설치 전 자세히 읽어보고, 안전하게 장착한다.



3.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 00000000



2011년 이전에 실시한
공산품 안전인증 마크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7항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검사기준

구 분	체중 범위(kg)
W1	10kg 미만
W2	9kg ~ 18kg 이하
W3	15kg ~ 25kg 이하
W4	22kg 이상

※ '영아용 보호장구'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2017).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차량 안전관리	
10-②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한다.

지표 설명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며 차량동승자 안전수칙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평정 기준

우수(4)	차량운행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고,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동승자(보육교사 등)가 이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
보통(2)	차량운행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나, 차량 내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동승자(보육교사 등)가 이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흡(0)	차량운행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차량안전수칙은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야 함
- 면담시 질문 예시
 - 차량운행 시 동승한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까?
 - 차량운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

차 량 안 전 수 칙 (예시)

□ 운전자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 승차 시

-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③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 ⑤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 ⑥ 광각실외후시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⑦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⑧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 중

-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 ③ 어린이가 차량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 하차 시

-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② 기어를 주차(수동일 경우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 ⑦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⑧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 동승보호자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승차 시

-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②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 시킨다.
- ③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준다.
- ④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차량 운행 중

-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 ③ 어린이가 차량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 시

-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 ③ 오토바이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한다.
-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 ⑥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⑦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11-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체교육을 진행한다.

지표 설명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대체교사, 차량기사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도록 함.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또는 어린이집 자체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외부기관 또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기록 확인
 - 외부기관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인 경우는 수료증(이수증) 등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권리존중교육 확인
 -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는 교육 내용 관련 기록으로 확인
(교사교육보고서나 운영일지 등에서 확인)

평정 기준

우수(5)	모든(90%이상) 보육교직원이 외부기관 또는 자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통(3)	대다수(70~90% 미만) 보육교직원이 외부기관 또는 자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
미흡(0)	일부(70% 미만) 보육교직원만 외부기관 또는 자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

11-②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지표 설명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12)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확인 방법

면담

☞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장기결석 아동 인지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숙지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평정 기준

우수(4)	모든 보육교직원(2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알고, 신고 및 상담전화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
보통(2)	일부 보육교직원(1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및 상담전화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흡(0)	모든 보육교직원(2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및 상담전화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면담 시 질문 예시
 - 학대피해아동을 보았거나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

- 아동학대 신고
 -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12(전국 동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500만원 이하를 부과함
 -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아동학대 신고 요령

【언제 신고할까?】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한다.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 친족 성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어디에 신고할까?】 국번없이 112

【어떻게 신고할까?】

신고자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피해아동(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학대의심내용 등)
- 학대행위자(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관계, 직장 등)
- 신고자(이름,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g/>)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무단결석 아동 및 퇴학 아동 관리 강화

- **(무단결석)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 (112)에 신고**

※ 가정방문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퇴학) 명확한 사유없이 퇴학 신청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112)에 신고**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매뉴얼

결석당일 (1일)	(담임교사)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원감에게 보고하고, 유선연락 지속 실시 (행정사항)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서식Ⅰ)
2일	(원장) -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 (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출석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정방문 실시 (행정사항)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서식Ⅰ) 무단결석 아동 중 아동학대 신고현황 교육청/시군구보고((서식Ⅱ))
사후 관리	(원장, 담임교사)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평소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담임교사) 무단결석한 아동이 재 등원하였을 경우,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원장)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영유아기의 학대는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주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에서 부모에 의한 발생률은 80%이상이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에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
-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정서학대는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그 결과가 바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 아동을 성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 성교를 하는 행위
-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물리적 방임: 영유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경우, 상한 음식먹이기 등이 포함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을 방치하며 하루일과를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영유아들을 한곳에 그냥 방치하고 교사가 함께하지 않는 경우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며, 분노와 두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상실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g/>)

11-③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안다.

지표 설명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확인 방법

면담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 인지 여부(보육교직원 2인 면담)

평정 기준

우수(2)	모든 보육교직원(2인)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
보통(1)	일부 보육교직원(1인)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
미흡(0)	모든 보육교직원(2인)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

TIP

❖ 모니터링 참고사항

- 면담 시 질문 예시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참고자료

-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의 예
 - 부드럽게 영유아의 이름 부르기
 - 영유아의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 “아직 젓가락질이 조금 어렵지? 익숙해지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거야”
 - “○○이는 정리를 꼼꼼하게 하네”
 - 영유아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기
 -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걸?”
 -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기
 - (혼자 컵에 물을 따르다 물을 연지른 영아에게)
 - “○○이가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 눈높이 맞추기,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는 행동 등
-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의 예
 -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야! 너! 애!” 등으로 위압적으로 부르는 경우
 - 표면적으로 존대말을 사용하지만 영유아를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 “왜 이러세요”, “별 걸 다해요”, “네가 그걸 한다구요?”
 - 영유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 “너의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든?”
 - 대화 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음, 짜증내는 표정, 비웃음, 팔을 잡아 당기는 행동 등
 - *출처: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2017).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시범사업용)

11-④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표 설명

가정에서도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의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권리존중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축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확인 방법

문서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 관련 안내자료
(가정통신문, 부모설명회, 게시판, 교육 등)

평정 기준

우수(2)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에 관한 안내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보통(1)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에 관한 안내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흡(0)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에 관한 안내자료가 없는 경우

V. 서 식

V

서식

부모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어린이집명			
소재지			
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민간 ☐ 가정 ☐ 직장 ☐ 협동		
원장		아동현황	정원/현원: ____ / ____
방문일자	2017년 월 일	방문시간	: ~ :
방문자	(부모) (서명)	어린이집 확인자	(원장) (서명)
	(전문가) (서명)		

00 시 · 군 · 구
00과

[] 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

영역	항목	모니터링 결과	총점
Ⅰ.건강관리	1. 건강검진 및 관리	() / 4점	()점
	2. 응급조치 체계	() / 8점	
Ⅱ.급식관리	3. 식단 및 영양 관리	() / 8점	()점
	4. 조리 및 식자재 관리	() / 12점	
Ⅲ.위생관리	5. 급식 위생관리	() / 10점	()점
	6. 조리실 청결	() / 10점	
	7. 시설·비품 위생	() / 12점	
Ⅳ.안전관리	8.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 / 7점	()점
	9.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 / 8점	
	10. 차량 안전관리	() / 8점	
	11.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 13점	
총계	11 항목	() / 총 100점	
총괄 의견			
특이 사항			

※ 특이사항에는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와 모니터링시 특별한 사항을 기록함

Ⅰ. 건강관리

항목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평가(v)			현장 개선 지도	비고
			우 수	보 통	미 흡		
1 건강 검진 및 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건강검진 보육교직원 수 (전체 _____명) ☐ 건강검진결과서 보관 여부 * 보육교직원: 채용신체검 사서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서 * 보육실습생: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특별활동강사: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노인 일자리 파견자: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2)	(1)	(0)		
	②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 식중독 예방 안내자료 ☐ 감염병 예방 안내자료	(2)	(1)	(0)		
2 응급 조치 체계	① 영유아에게 위급상태 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 ☐ 응급처치동의서(보호자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 * 현원 _____중 _____명 누락	(2)	(1)	(0)		
	② 사용기간 내의 비상약품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준수 ☐ 안전한 장소(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 별도 보관	(4)	(2)	(0)		
	③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한다.	☐ 감염병 관리대책(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 등) ☐ 신고 의무사항 인지 여부	(2)	(1)	(0)		

II. 급식관리

지표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평가(V)			현장 개선 지도	비고
			우 수	보 통	미 흡		
3. 식단 및 영양 관리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한다.	☐ 식단표 영양사 작성 여부 ☐ 식단표와 제공된 급간식 일치 여부 ☐ 급식실시기록(변동사항 ____건)	(2)	(1)	(0)		
	②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식단표 ☐ 간식 1일 2회(오전,오후) 제공 ☐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 제공 주 ____회	(2)	(1)	(0)		
	③ 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알레르기 조사자료(알림장, 면담자료, 가정통신문 등) ☐ 부모 요구 반영한 급간식 실시 기록(알레르기 영유아 재원시 필수 확인)	(4)	(2)	(0)		
4. 조리 및 식자 재 관리	①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급식에 제공된 음식 전량 폐기 ☐ 냉장고, 냉동고에 남은 음식 보관 여부(전일 식단표 확인)	(4)	(2)	(0)		
	②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 보관, 식품구입(입고)일자, 유통기한 등)을 준수한다.	☐ 식품구입(입고)일자 기입(미기입 식품 ____종) ☐ 보관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관(부적절한 보관 ____종) ☐ 유통기한 준수(유통기한 경과 식품 ____종)	(4)	(2)	(0)		
	③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식재료 보관장소 청결·위생 상태 ☐ 식품과 소모품 분리 보관 ☐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 표시	(4)	(2)	(0)		

III. 위생관리

지표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평가(V)			현장개 선지도	비고
			우 수	보 통	미 흡		
5. 급식 위생 관리	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 점검대상 ☐ 조리원 ☐ 조리사 ☐ 영양사 - 위생복장 ☐ 위생모(머리카락 밖으로 나오지 않음) ☐ 위생복(전용 앞치마 가능) ☐ 위생화(전용 신발, 덧신 가능) ☐ 장신구 미착용	(4)	(2)	(0)		
	②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 점검시간 ☐ 점심식사 ☐ 간식(오전/오후) - 급배식도구 관리 ☐ 전용집게(일회용장갑, 국자) ☐ 개별식기 사용 ☐ 기타() - 급배식과정 관리 ☐ 테이블 위생상태 - 복장관리 ☐ 앞치마 착용 ☐ 앞치마 청결상태	(2)	(1)	(0)		
	③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젓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 식수 ☐ 정수기 필터 정기 교환 ☐ 상수도 사용 시, 끓인 물 사용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비치 - 우유(모유), 이유식 ☐ 냉장보관 ☐ 남은 우유(모유) 폐기 ☐ 분유 보관상태(습기 없는 곳) - 컵, 젓병, 젓꼭지 ☐ 관리소독 상태 ☐ 컵 사용 전후 구분 ☐ 젓병·젓꼭지 소독·관리(1회 사용 후 소독)	(4)	(2)	(0)		
6. 조리실 청결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조리실 환경 위생관리 ☐ 벽 ☐ 바닥 ☐ 천장 ☐ 창문 - 조리실 시설설비 위생관리 ☐ 가스레인지 ☐ 조리대 ☐ 식기수납장 ☐ 선반 ☐ 개수대 - 주방가전 관리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전기밥솥 ☐ 기타()	(5)	(3)	(0)		

		- 후드환풍기 ☐ 설치 ☐ 작동 ☐ 청결 - 냉난방기 ☐ 설치 ☐ 작동 ☐ 청결 - 방충망 ☐ 설치 ☐ 청결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조리도구 및 비품 관리 ☐ 식기 ☐ 칼 ☐ 도마 ☐ 행주 ☐ 기타 주방도구 (냅비, 국자, 후라이팬 등) - 칼·도마 용도별 구분 사용 ☐ 칼 ☐ 도마	(5)	(3)	(0)	
7. 시설·비품 위생	①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과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기본 공간 ☐ 보육실 ☐ 화장실(세면실) ☐ 조리실 ☐ 현관 ☐ 복도(통로) - 기타 공간 ☐ 계단 ☐ 유희실 ☐ 교사실 ☐ 원장실 ☐ 교재교구실 ☐ 기타() - 놀잇감 청결관리 ☐ 보육실의 놀잇감(바구니 포함)	(5)	(3)	(0)	
	②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개별 사용 ☐ 이불 ☐ 요 ☐ 베개 ☐ 칫솔 ☐ 양치컵 - 청결 상태 ☐ 이불 ☐ 요 ☐ 베개 ☐ 칫솔 ☐ 양치컵 ☐ 칫솔과 양치컵 보관 상태 (바구니, 쟁반, 소독기 등)	(5)	(3)	(0)	
	③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 보육실(실내 공유 공간 등) 환기 여부 (급간식 후, 낮잠 후, 전이시간 등) ☐ 적정 온도	(2)	(1)	(0)	

IV. 안전관리

지표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평가(v)			현장개 선지도	비고
			우 수	보 통	미 흡		
8.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 가구 등의 모서리 매끄럽거나 모서리 보호대 ☐ 손끼임 방지 ☐ 출입문, 창문 안전장치 ☐ 볼트와 너트 이음장치 ☐ 화장실, 계단 등 미끄럼 방지 ☐ 전기 콘센트(전선 포함) 관리 ☐ 개폐관리(온수조절 장치, 정수기 포함) ☐ 블라인드 줄 - 실내외 놀잇감 ☐ 실내 놀잇감 파손 ☐ 실외 놀잇감 파손 ☐ 놀잇감 크기 - 물품 보관 ☐ 보육실(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테이프커터기, 접착제,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각종 스프레이, 침핀,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화장실(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조리실(칼, 가위, 가스레인지 등) ☐ 기타(빗자루, 대걸레, 삽, 가시가 있는 식물 등)	(5)	(3)	(0)		
	②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비상시 대처방안의 수립 ☐ 비상구(비상구 유도등) ☐ 소화용 기구 ☐ 가스누설 경보기 ☐ 비상계단(미끄럼대)	(2)	(1)	(0)		
	③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9.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①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 재난대비 안전 교육 ☐ 교통안전 교육 ☐ 소방 훈련 관련 기록	(4)	(2)	(0)		

지표	관찰 내용	확인 내용	평가(V)			현장개 선지도	비고
			우 수	보 통	미 흡		
	②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 ____명 ☐ 오프라인 교육 * 외부교육 ____명 * 자체교육 ____명	(2)	(1)	(0)		
	③ 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귀가동의서 구비 전체 현원 ____명 중 ____명 ☐ 귀가동의서 필수항목 기재여부 ☐ 인계과정 준수 여부	(2)	(1)	(0)		
10. 차량 안전 관리	①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 및 차량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차량 신고필증 ☐ 차량점검안전표 안전점검 실시 ☐ 경광등 ☐ 소화기 ☐ 구급상자 ☐ 개별 안전벨트 ☐ 영아용 보호 장구	(4)	(2)	(0)		
	②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한다.	☐ 차량안전수칙 부착 ☐ 차량안전수칙 숙지 여부 확인	(4)	(2)	(0)		
11. 아동 학대 예방 및 조치	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체교육을 진행한다.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교육 ☐ 온라인 교육 ____명 ☐ 오프라인 교육 * 외부교육 ____명 * 자체교육 ____명	(5)	(3)	(0)		
	②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인지 ☐ 장기 결석 아동 인지 및 신고방법 ☐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숙지	(4)	(2)	(0)		
	③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안다.	☐ 아동권리존중 인지 여부	(2)	(1)	(0)		
	④ 가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 관련 안내자료 ☐ 부모 안내 여부(가정통신문, 부모 설명회, 게시판 등)	(2)	(1)	(0)		

[] 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어린이집명			
소재지			
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민간 ☐ 가정 ☐ 직장 ☐ 협동		
원장		아동현황	정원/현원: ____ / ____
방문일자	2017 년 월 일	방문시간	: ~ :
컨설턴트	(서명)	어린이집 확인자	(원장) (서명)

00 시 · 군 · 구
00과

()어린이집 ()차 컨설팅 결과

(시군구 : 어린이집 : 모니터링 점수:)

영역	항목	컨설팅 주요내용
Ⅰ.건강관리	1. 건강검진 및 관리	
	2. 응급조치체계	
Ⅱ.급식관리	3. 식단 및 영양관리	
	4. 조리 및 식자재관리	
Ⅲ.위생관리	5. 급식 위생관리	
	6. 조리실 청결	
	7. 시설·비품 위생	
Ⅳ.안전관리	8.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9.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10. 차량 안전관리	
	11.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총계	컨설팅 항목수	()
총괄 의견		

서 약 서

본인은 부모모니터링단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보 내용

가. 정보 내역

- 모니터링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영유아 정보
- 모니터링 어린이집 운영 전반 관련 정보
- 모니터링 지표 점검 내용

2.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o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o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정보 제공 제한)
- o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3. 본인은 000시 000구 모니터링 단원으로서 모니터링 시 습득한 어린이집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 유출(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언론사 등)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접촉됨을 인지하고, 동 사안 준수를 엄중히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위의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000시·군·구청장 귀하

VI 부 록

부록 1 2017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운영 사항		
모니터링단 선정기준	(부모) -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참여 부모	(부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할 사군·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함
모니터링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2~'14)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제외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 조치 확인 등)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 * 차량 사고, 급식 부실, 아동학대, 어린이집내 안전 사고 등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4~'16)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 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종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조정 함) 2016년 열린어린이집(보건복지부 지정, 보육기반과-10993('16.12.14))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VI. 부 록

구분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모니터링 활동	(방문일정) ▪ 어린이집 방문일자 사전 협의 - 방문 3일전까지 (소요시간) ▪ 1개소 기준 3시간	(방문일정) ▪ 어린이집 방문일자 사전 협의 - 방문 일주일전까지 (소요시간) ▪ 1개소 기준 2시간
총점 및 지표 수	▪ 39개 지표 1) 건강관리(6개) - 12점 2) 급식관리(9개) - 24점 3) 위생관리(11개) - 30점 4) 안전관리(13개) - 34점	▪ 30개 지표 1) 건강관리(5개) - 12점 2) 급식관리(6개) - 20점 3) 위생관리(8개) - 32점 4) 안전관리(11개) - 36점
컨설팅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자율신청 ▪ 모니터링 결과 심도 깊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선정 <신 설>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모니터링결과 미흡 어린이집(필수 선정)
	(컨설팅 방법) <신설> <신설>	(컨설팅 방법) ▪ 컨설팅 추가 실시 가능(1→2회), 컨설팅 이후 보육품질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 부모모니터링 실시 가능 ▪ 2차 컨설팅의 경우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부록 2

2017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주요 변경사항

구분	지 표
삭제 지표	1-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3-③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며,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된다. 4-①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다. 5-② 식단표 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
변경(통합) 지표	6-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기존의 7-③ 지표와 통합하여 변경) 6-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기존의 7-② 지표와 통합하여 변경) 7-①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과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기존의 8-② 지표와 통합하여 변경) 7-②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기존의 8-④ 지표와 통합하여 변경) 8-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기존의 9-②, 9-③ 지표와 통합하여 변경) 10-①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신고필증 및 차량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기존의 11-② 지표와 통합하여 변경) 11-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체교육을 진행한다.(권리존중 내용 추가)
추가 (신설)지표	11-③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안다.

「2017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 보육사업안내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방법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또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